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2766
등록일자	2021. 12. 24.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

#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 목 차

<b>I. 감사개요</b> .....	<b>1</b>
<b>II. 감사대상 현황</b> .....	<b>1</b>
<b>III. 감사결과</b> .....	<b>2</b>
1. 총 평 .....	2
2. 지적사항 총괄표 .....	4
3. 지적사항 .....	4
4. 권고사항 .....	9
5. 모범·적극행정 사례 .....	10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b> .....	<b>15</b>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	15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15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16
<b>V. 행정사항</b> .....	<b>17</b>
<b>【붙임】</b>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I 감 사 개 요

### □ 감사목적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및 대부계약·사용료 징수 등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 감사기간 : 2021. 10. 21.(목) ~ 11. 5.(금) (기간 중 12일)

□ 감사대상 : 공유재산 관리부서 (27개 부서)

□ 감사범위 :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장소 :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 감사중점사항

- ▶ 재산관리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등 재산 운영 적정성 여부
- ▶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적정성 여부

## II 감사대상 현황

### □ 공유재산 현황

(2021. 9. 28.기준)

소유자	구 분	계		일반재산		행정재산	
		필지 동	면적(m <sup>2</sup> )	필지 동	면적(m <sup>2</sup> )	필지 동	면적(m <sup>2</sup> )
계	토지	7,914	3,708,063.05	328	25,875.45	7,586	3,682,587.60
	건물	167	154,951.43	1	93.95	166	154,857.48
구유	토지	4,021	1,188,261.95	284	19,416.76	3,737	1,168,845.19
	건물	157	150,867.51	1	93.95	156	150,773.56
시유	토지	3,893	2,519,801.10	44	6,058.69	3,849	2,513,742.41
	건물	10	4,083.92	-	-	10	4,083.92

- ▶ 2021년 9월말 기준 서대문구 공유재산(토지기준)의 면적은 3.71km<sup>2</sup>로 구 전체 면적 17.61km<sup>2</sup>의 21.1%를 차지한다.
- ▶ 공유재산 중 시유재산과와 구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 32%이며, 구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98.3%로 행정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2%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 III 감 사 결 과

#### 1. 총 평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 구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 부서별 공유재산 현황 등 실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유재산 현황 공개로 구민의 알 권리 및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 또는 감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의 운영을 단순한 행정목적에서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외 다양한 개별법이 있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외에 부서별 다른 업무시스템을 병행하거나,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개별 부서 사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순환근무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감사는 특정감사로서 이러한 공유재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산관리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감사결과 공유재산 관리 담당 직원 대부분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른 탄력적 운영, 주민편의를 위한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등 공유재산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숙지 미흡, 잘못된 관행 답습, 업무 소홀, 재산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총 19건의 지적사항(시정 8개, 기관경고 9개, 권고 2개)이 확인되었으며,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분야에서 부서별 공유재산 실태 파악 소홀 및 대장 관리 부적정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었고, 변상금 부과를 누락하거나, 관련 법령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관리 소홀도 다수 확인되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현황을 기록·유지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산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의 경우,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담당자 변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재산관리 모니터링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명, 건, 천원)

합 계			징계	시정 (금액)	기관경고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9	-	45,817	-	8 (45,817)	9	-	2	-	-

※ 모범·적극행정 사례 : 5건

## 3. 지적사항

### 1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누락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2020년도에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공유재산 변상금 17건 19,505천원에 대하여 부과를 누락함.

###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업무 소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따라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공유재산의 점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11건 12,159천원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음.

### 3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리 부적정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따라 해당연도 점유기간을 일수별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분을 부과하여야 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의 별지 25호 서식에 의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즉,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경우 도로점용자에게 도로점용 기간만료에 대한 안내 후 사용여부에 따라 연장이나 폐쇄처리를 하여야 함.

⇒ 점용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 점용료를 1년치 부과하였고, 점용기간이 끝났음에도 기간 연장이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4 도로점용허가 대장 관리 소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 소유주 변경, 기간만료, 원상회복 등으로 인해 점용허가 사유가 없어진 11건에 대하여 폐쇄처리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사용인 채로 변동사항 정비를 하지 않음.

## 5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매년 1회 이상 변동사항 및 공부와의 일치 여부 등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정기 실태조사 시 도로점용허가대장의 변동사항, 공부상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함.

⇒ 2019년 12월에 취득한 구유지 1건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함.

## 6 공유재산 등기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유재산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적정등기일에서 29일~109일 초과하여 등기를 실시함.

## 7 과오납된 사용료 미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과오납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 8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하여야 함.

- ⇒ 공유재산 변상금을 220일 ~ 250일을 초과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음.
- ⇒ 시유지(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소멸시효 기간 5년간 소급하여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변상금 427,590원에 대하여 부과를 누락함.

## 9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34조(대부료의 납기), 「2021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평가 방법으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없는 경우 감정평가)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액은 3년 동안 적용가능하고 1차 년도 사용료에는 감정평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함.

- ⇒ 사용료 산출을 위해 재산평가액을 산정하면서 3년이 초과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사용허가 1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적용함.

## 10 공유재산 보험 중복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 건물 1건에 대하여 공제회에 가입하였음에도,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함.



## 11 사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한 독촉 지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따르면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

⇒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체납된 17건 총 78,979,97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을 초과하여 독촉고지를 함.

## 12 사유재산 매각 미체결에 따른 제반비용 미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수신청서에도 미수신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관련비용(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분할비 등 제반비용)을 본인이 납부할 것을 동의함이 기재되어 있음.

⇒ 2018. 2월 신청인이 사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함에 따라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매계약 체결안내를 두차례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계약이 미체결 상태로써 제반비용을 매수신청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제반비용 1,404,700원에 대해 부과하지 않음.

## 13 민원 접수 처리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민원사무처리 제도 해설(서울특별시)에 의거,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나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실에서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입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하면 처리부서는 이를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및 매수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공유재산 대부 및 매수신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접수토록 하지 아니하고 처리부서에서 직접 매수신청서를 접수처리함.

⇒ 사유재산(체비지) 대부 신청 및 공유재산 매수신청서에 따른 수수료(총 9건, 23,300원) 부과를 누락하였음.

## 14 재산관리관 변경 업무 소홀

「서대문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에 의하면 구청 및 동·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업 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변경될 경우 총괄관은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을 하여야 함.

⇒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준공한 후 관련 업무를 교통관리과로 이관하였음에도, 재무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을 실시하지 않아,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음.

## 15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적용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에 따르면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하고,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 위탁기관에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부과하면서 고시이자율(COFIX)을 적용하지 않고, 이자율을 3%로 일괄 적용하여 355,310원의 이자를 과다 부과함.

## 4. 권고사항

### 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대장을 갖춰두어야 하고, 매년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우리구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재산 현황 입력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함.
- 각 재산별로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과 무단점유 및 변상금 내역 등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권고사항 및 기대효과

-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시스템 운영 총괄부서로서 각종 재산 변동 사항을 각 재산 관리관에게 입력 처리 요구하고, 각 재산 관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장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부정확하게 작성·관리하거나 대부 및 사용허가 내역, 무단점유 및 변상금 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
-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 2 공유재산 공제회 공제금 부과 안내 업무 철저

####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 그 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사용수익·대부자에 대해 우리구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 권고사항 및 기대효과

- 우리구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총괄 가입 업무를 하는 재무과에서는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용수익·대부 시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대부·사용 조건에 명시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처리

## 5. 모범·적극행정 사례

### 1 | 쉽게 찾아보는 공유재산 업무공유방 운영

#### □ 개 요

- ▶ 운영기간 : 2021. 2월 ~ 계속
- ▶ 운영장소 : 서울행정계시판 - 행정정보 - 예산 및 회계업무 - 공유재산 업무공유방
- ▶ 게시주기 : 월 2회
- ▶ 게시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 수립, 사용·대부 등 주제별 업무매뉴얼
  -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 해석 등

#### □ 추진실적

- ▶ 공유재산 매뉴얼 : 3건
- ▶ 공유재산 질의회신사례 : 14건
- ▶ 공유재산 실무교육 자료(동영상) : 1건

#### □ 기대(파급)효과

- ▶ 공유재산 관리업무 중요성 인식 강화
- ▶ 주제별 관리업무 중요성 인식 강화
- ▶ 재산관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2 팝업스토어 민간위탁 운영

### □ 개 요

- ▶ 추진배경 : 제로페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중 16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사업인 팝업스토어 조성비용으로 교부 받아 조성
- ▶ 용 도 : 팝업스토어 (소상공인에게 공간을 빌려주어 일정기간동안 제품 및 브랜드 홍보)
- ▶ 위 치 : 대현동 90-22, 90-24 101호, 102호
- ▶ 소요예산 : 1,192,514천원(공간매입 950,000천원, 공사 242,514천원)
- ▶ 운영방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공개모집)
- ▶ 운 영 자 : 프로젝트 렌트
- ▶ 위탁내용
  - F&B(Food&Beverage)와 생활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재창업자 포함) 위한 팝업매장 운영
  - 이슈형 콘텐츠 개발 전시로 공간 모객(募客) 활성화
  - 지역 콘텐츠와의 연계 및 공동행사로 지역 커뮤니티 조성

### □ 추진경과

- ▶ 2019. 09. 24. : 소상공인 팝업스토어 조성 운영계획 수립
- ▶ 2019. 10. 21.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민간위탁사무적정
- ▶ 2019. 10. 29. :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공간매입 적정
- ▶ 2019. 12. 09. :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 ▶ 2020. 02. 07.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 2020. 03. 23. : 민간위탁 수탁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
- ▶ 2020. 09. 25. : 팝업스토어 건축공사 준공
- ▶ 2020. 10월 ~ : 팝업스토어 운영

### □ 기대(파급)효과

- ▶ 대다수의 민간위탁은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으나, 팝업스토어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여 민간위탁 업체에서 팝업 공간 임대수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인건비 충당
- ▶ 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해 공간임대 사업자 모집, 고객 욕구파악, 상품개발 컨설팅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팝업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3 신촌 박스퀘어 운영 및 활성화

#### □ 현 황

- ▶ 위 치 : 서대문구 신촌역로 22-5(신촌기차역 앞)
- ▶ 규 모 : 지상 1~3층 건물연면적 745.46㎡ (점포 60개, 다목적홀, 공중화장실 등)
- ▶ 영업개시 : 2018. 9. 15.
- ▶ 입점현황 : 46개 점포(거리가게 25, 청년점포 등 21) ※ 2021. 2. 1. 기준

#### □ 추진실적

- ▶ 입점점포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컨설팅·홍보 지원 : 3개소, 21,600천원
- ▶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운영 : 4개소, 12,160천원
- ▶ 입점매장 전체 환경개선 지원 : 총 51개소, 38,800천원 지원
  - 어닝시설 교체, 메뉴판 교체 및 앞치마 지원 제작
- ▶ 청년창업가 4기 모집 및 운영 : 10개소, 3,000천원
- ▶ 청년키움식당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11개팀, 180,000천원
- ▶ 코로나19 지속적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지원 : 51개소, 57,833천원

#### □ 기대(파급)효과

- ▶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이후(2020~2021년) 약 20%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거리가게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25개 점포 개설
  - 청년창업가 38개팀 창업 및 일자리 67명 창출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31개팀 130명 참여

#### 4 |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 무인정산 주차관제장치 도입**

##### □ **현 황**

- ▶ 공유재산(건물) 운영 현황

구 분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비품창고
16개소	14개소	1개소	1개소

##### □ **추진내용**

-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유휴시간을 시간제 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에게 주차구획 제공
- ▶ 사업대상 : 공영주차장 4개소

구분	재산명	소재지	면적(m <sup>2</sup> )
1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3-75	2,731.55
2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13	1,484.9
3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서대문구 홍은동 9-164	1,400.8
4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	서대문구 홍은동 11-23	3,472

- ▶ 추진실적(이용건수, 단위:건)

재산명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2272	3757	2572	8,601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5665	6821	6068	18,554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	3	1534	1,537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	-	443	3759	4,202
합 계	7,937	11,024	13,933	32,894

##### □ **기대(파급)효과**

- ▶ 유휴 주차구획을 활용함으로써 주차구획 증설효과
- ▶ 주차구획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감소효과

## 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 □ 개 요

- ▶ 사업목적 : 교육매체의 발달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교육 환경 변화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운영 기반 마련
-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 공사기간 : 2021. 1. ~ 4.(4개월)

### □ 추진내용

- ▶ 미사용 유휴공간인 직원식당을 ‘온라인 스튜디오’로 개조
- ▶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
  - 스튜디오 시설공사(2~3칸)
  - 조정실 시설공사
  - 대기실 시설공사
- ▶ 장비구매 및 시스템구축
  - 방송장비 구축(영상제작, 음향제작 시스템 구축)
  - 조정실 장비 구축
  - 대기실 시설공사 및 비품 구축
  - 온라인 시스템과 스튜디오 연계기능 구축 (멀티미디어 송수신시스템 구축)

### □ 기대(파급)효과

- ▶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운영 환경 조성
- ▶ 온라인 교육 환경을 기대하는 수요자의 욕구 충족





## IV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 처분기준

- 징 계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공무원 신분상 조치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 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1. 11. 16.(화) 14:00
- 심의위원 : 5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별첨

###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명)

연도	부서	안 건 명	심의결과		
			처분 종류 <sup>1)</sup> (안)	재정상 조치금액 (안)	신분상 조치인원 (안)
<b>총 19건</b> (시정 8, 기관경고 9, 권고 2)				추징 45,674,550 환급 142,090	
1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누락	시정	추징 19,504,980	
2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추징 12,158,690	
3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4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대장 관리 소홀	기관경고		
5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소홀	시정	추징 4,908,120	
6	일자리경제과	재산관리관 변경 업무 소홀	기관경고		
7	청소행정과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적용 부적정	기관경고		
8	재무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권고		
9	재무과	공유재산 공제회 공제금 부과 안내 업무 철저	권고		
10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등 공유재산 대장 관리 소홀	시정		
11	푸른도시과	시유재산 과오납된 사용료 미반환	시정	환급 142,090	
12	푸른도시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 7,270,470	
13	푸른도시과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기관경고		
14	푸른도시과	공유재산 보험 중복 가입	기관경고		
15	도시재정비과	시유재산 매각 미체결에 따른 제반비용 미부과	시정	추징 427,590	
16	도시재정비과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누락	시정	추징 1,404,700	
17	도시재정비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한 독촉 지연	기관경고		
18	도시계획과	민원 접수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19	복지정책과	공유재산 등기 업무 부적정	기관경고		

#### 1) 처분종류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환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 의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교정 및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V

## 행정 사항

##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 조치방법 : 붙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건별 ‘조치할 사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시정·기관경고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개선요구·권고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
-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2. 2. 18.(금)

붙 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